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인천광역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안 번호	76
----------	----

제출년월일 : 2014.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13.3.23.)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도권교통조합 규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조합회의 제6조 제2항, 제6조 제3항 4호, 5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개정

3. 개정규약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 붙임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중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 칙 <2014. . .>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행정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p> <p>①(생략)</p> <p>②조합회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5인, 인천광역시 3인, 경기도 5인, <u>국토해양부</u>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0.22></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9.10.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의 교통업무 담당 국장 각1인 2. 조합원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교통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각1인 3.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교통관련 전문가 서울특별시 3인, 인천광역시 1인, 경기도 3인 4. <u>국토해양부</u>의 광역교통 담당 국장 1인 5. <u>국토해양부</u>장관이 추천하는 교통 관련 전문가 1인 	<p>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p> <p>①(현행과 같음)</p> <p>②----- ----- -----<u>국토교통부</u>----- -----</p> <p>③-----</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현행과 같음) 4. <u>국토교통부</u> ----- 5. <u>국토교통부</u>----- -----

관계법령 발췌서 「정부조직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전부개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7. 생략

8. 안전행정부

9.~15. 생략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제정 2005. 2. 4 제1호
개정 2007. 9. 7 제2호
개정 2009.10.22 제3호
개정 2012. 9.17 제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대중교통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7>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은 수도권교통본부(이하 "조합"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07.9.7>

제3조(조합의 구성) ① 조합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② 대상지역은 조합원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에 둔다.
<개정 2007.9.7, 2009.10.22, 2012.9.17>

제5조(조합의 사무)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 수도권 교통정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무
3.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계하는 도로·철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무
4. 수도권 광역버스에 관한 사무
5.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관한 사무
6.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관한 사무
7. 수도권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조합회의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5인, 인천광역시 3인, 경기도 5인, 국토해양부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0.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9.10.22>

1. 조합원의 교통업무 담당 국장 각1인
2. 조합원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각1인
3.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교통관련 전문가 서울특별시 3인, 인천광역시 1인, 경기도 3인
4. 국토해양부의 광역교통 담당 국장 1인
5.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는 교통관련 전문가 1인

④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자격을 가진 때까지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해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보궐선출 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5.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6.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의 선임
7. 조합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8.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사항이 제8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조합원별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회의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조합원 중 1개 또는 2개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관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조합장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장이 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9.7>

③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 무

제14조(경비분담) ① 조합의 경비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정부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조합의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이 조합회의의 구성 비율대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장이 임용한 직원의 인건비는 조합원이 똑같이 나누어 분담한다.<개정 2007.9.7>

③ 조합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기준은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제15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조합원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결산) ① 조합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합원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조합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합의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제5장 해산 등

제18조(조합의 해산)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간의 협의에 의한다.<개정 2007.9.7>

제19조(기타) 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2005.2.4>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9.7>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22>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9.17>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